

인 천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23고단10377 사기, 무고
피 고 인 황문식 (591103-1○○○○○○), 자영업
주거 고양시 ○○구 ○○로○○○번길 ○○, ○○호(○○동)
(현재 ○○구치소 재소중)
등록기준지 충북 ○○군 ○○면 ○○로 ○○○
검 사 임○○(기소), 변○○(공판)
변 호 인 법무법인 조○
담당변호사 김○○
판 결 선 고 2024. 12. 18.

주 문

피고인은 무죄.

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
이 유

1. 공소사실

가. 사기

피고인은 장○○(2022. 7. 29. 인천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)과 동업으로 인천 중구

○○○○로 ○○에서 ‘○○수산’이라는 상호로 수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.

피고인은 2020. 12. 28.경 인천 연수구 ○○동 ○○○타워 ○○층에 있는 황○○ 변호사 사무실에서 장○○과 함께 피해자 강○에게 ‘인천항만공사의 항만부지를 임대하기 위해 입찰을 하는데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돈 8,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,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면 적어도 한 달 이내에 갚을 수 있다, 대출이 안 나올 시에는 이○○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, 이○○는 집안 사람이며 위임을 받았다’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.

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장○○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위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, 피고인과 장○○은 이미 2020. 10. 7.경 인천 중구 항동7가 ○○-○ 소재 인천항만공사의 항만부지의 임대에 대하여 입찰을 하였으나 서류 미비 및 자격미달 등을 이유로 유찰되었고, 인천항만공사가 공고한 입찰 조건에 따르면 위 항만부지의 입찰최저가격은 88,020,350원 상당이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% 상당만 납부하면 되므로 8,000만 원 상당의 입찰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, 장○○은 이○○로부터 이○○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.

피고인은 장○○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○○수산 농협 계좌(352-○○○○-○○○○-○○)로 7,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.

나. 무고

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으로 2021. 4.경 강○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인천연

수경찰서에서 장○○과 함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, 위 사기 사건의 수사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 자신도 장○○에게 속아 장○○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처럼 장○○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.

피고인은 2021. 10. 19.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인천논현경찰서에 장○○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“피고소인 장○○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항만부지 임대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(피고인)에게 ‘인천항만공사로부터 항만부지 임대 입찰에서 최종 낙찰을 받았다. 그곳 냉동보관창고 건설을 위한 시설비 명목으로 인천항만공사에 입금할 8,000만 원을 장○○으로부터 빌리려고 하는데 네 명의로 차용해 달라. 차용금은 한 달 내로 갚을 것이다’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2020. 12. 28.경 장○○에게 8,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¹⁾하게 하였다.”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, 2021. 10. 28.경 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 당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.

그러나 사실 피고인 역시 항만부지 임대를 낙찰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장○○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장○○과 함께 나누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, 피고인은 장○○과 공모하여 장○○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었지 장○○에게 속아서 장○○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아니었다.

이로써 피고인은 장○○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.

2. 판단²⁾

- 1) 장○○이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○○수산 농협 계좌로 송금한 액수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차용약정에 따른 8,000만 원에서 5%의 선이자 400만 원을 공제한 7,600만 원이다.
- 2) 피고인의 변호인은 ‘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재차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으므로,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’고 주장하나(2024. 7. 1.자 변호인의견서),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

가.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

피고인이 장○○과 함께 인천항만공사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,600만원(이하 ‘이 사건 금원’이라고 한다)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. 그러나 당시 피고인도 장○○에게 속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. 따라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장○○의 단독범행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해당하며,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○○을 고소한 행위도 무고가 아니다.

나. 구체적 판단

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도 장○○에게 기망당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,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취득하였다거나, 피고인이 장○○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이 허위사실의 고소로 무고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1) 피해자는 2021. 4.경 피고인과 장○○을 사기,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. 검찰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22. 7. 29. 장○○을 피해자에 대한 사기,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(공소사실: 장○○은 피해자에게 ‘이○○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. 이○○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’고 말하는 등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항만공사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이○○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)로 단독기소(인

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(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9도6614 판결 참조), 불기소처분 후 재기소를 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며, 기록상 검사가 미필적이거나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,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천지방법원 2022고단4690호, 이하 ‘관련사건’이라고 한다)하는 한편, 피고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. 장○○에 대한 관련사건은 2024. 1. 31.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.

2) 이 사건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장○○은 이 법정에서 ‘피해자에 대한 사기는 피고인이 주도하였고,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도 피고인이다. 양식장 운영 등 문제 때문에 피고인 대신 혼자 덮어쓰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주범이다. 나는 이 사건 금원의 사용에 관여한 바 없고 이○○ 명의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도 없다’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. 그러나 장○○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.

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‘피고인이 아니라 장○○이 적극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등 기망하였고, 이○○ 명의의 위조된 위임장도 장○○이 교부하였다.’는 취지로 진술하였다.

② ○○수산의 근로자였던 탁○○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‘○○수산의 실운영자는 장○○이고, 평소에도 장○○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. 이 사건 금원은 장○○의 지시에 따라 여러 곳에 나누어 이체하였는데 대부분 장○○과 관련된 지출이었다. 이체 당시 장○○의 지시에 따라 적요란에 ‘항만공사’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는데, 위와 같이 기재하라고 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장○○이 평소에도 피고인에게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봐서 이번에도 일부러 그런 것 같다’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. 그런데 계좌이체내역,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, 문자메시지 내역(증거목록 순번 46, 47, 48번) 등에 위하면 탁○○의 위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.

③ 장○○은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이○○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거나 이를

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, 피해자, 김○○(황○○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변호사)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장○○이 이○○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, 앞서 본 바와 같이 장○○의 이○○ 명의 위임장 위조 및 행사 관련 혐의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.

④ 장○○은 이 법정에서 ‘피고인 대신 혼자 덮어쓰려고 했었다’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, 증거들에 의하면 장○○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‘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’는 취지로 오히려 피고인에게 덮어씌우려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.

⑤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차주로서 실질적 채무를 부담하고도 이 사건 금원의 사용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, 결국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의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은 반면, 장○○은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한 채무나 손해는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 금원의 사용을 주도하였는바,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모습은 장○○과의 관계에서 사기 범행의 주범이라고 보기에 다소 어색한 면이 있다 (한편, 장○○은 ‘피고인이 아니라 내가 이 사건 금원을 실질적으로 변제하였다’라는 취지로 주장하나, 증거들에 의하면 이○○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).

3. 결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,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
판사 김○○ _____